

의안번호	제642호-관련
의결 연월일	2014년 4월 11일 (제 329 회)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자	이광희 의원 외 1인
발의연월일	2014년 4월 11일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42호-관련
----------	---------

제안연월일 : 2014년 4월 11일

제안자 : 이광희 의원 외 1인

1. 수정이유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된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부서 관계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 제3조(적용범위),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안 제6조(학교숲 관리), 안 제7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기본계획수립)제2항에서 “원안의 8가지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사업은 하나로 합쳐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으로 수정함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제5조(학교숲조성기준)제5호 질량성 제고의 “원안내용”을 “실내
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로 수정함

다. 제6조(학교숲관리)제1항의 “원안내용”을 “교육감은 수목관리대
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라. 제7조“(심의회 구성)”을 제7조“(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7조
제1항의 “원안내용”을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
항이 있을 시 학교숲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3항은 삭제하였음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1) 기 간: 2014. 3. 20~2014. 3. 30(10일간)

2) 제출의견: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충청북도교육청 의견제출: 2014. 4. 2.

4. 수정조례안 신·구대비표: 붙임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u>적용범위</u>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u>는</u>----- ----- ----- ----- ----- .</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학교숲 조성 및 관리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u> 2. <u>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u> 3. <u>학교숲 관련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u> 4. <u>학교숲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5. <u>학교숲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6. <u>학교숲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u> 7. <u>적합한 수종 식재에 관한 사항</u> 8. <u>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원안과 같음) ② ----- ----- . 1. <u>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u>전문인력구축 및 적합한 수종 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u> 3. 「<u>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u>」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5. <u>질량성 제고: 법령에 따른 녹지면적을 확보하거나 녹지면적 부족 시 교육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옥상정원,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숲 여건 조성</u></p>	<p>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 ----- -----.</p> <p>1~4 (원안과 같음)</p> <p>5. <u>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u></p>
<p>제6조(학교숲 관리) ① <u>교육감은 학교의 수목관리·보호를 위하여 수목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수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하며, 그 대상과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학교숲 관리) ①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 -----거쳐야-----.</p>
<p>제7조(심의회 구성) ① <u>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심의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u>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u> -----.</p> <p>③ <u>삭제</u></p>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① 교육감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산림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08.6.2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 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